

현대 독일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와 책임

한수경*

I. 서론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制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¹⁾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는 언론자유’는 문제라는 단순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악플, 신상털기 등을 비롯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상세히 관찰한다면, 이러한 역기능들이 지나친 언론자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마땅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가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면서 네티즌들의 사이버상의 표현행위들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당하고 있다.

‘책임성’이라는 단어는 언론인들과 네티즌들의 정당한 정치, 사회적 발언의 규제까지 정당화시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언론자유와 관련해 ‘책임성’을 내세웠던 정권들이 대체로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책임성 있는 언론자유’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 인천대

- 1) 여기서 언론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보호 영역인 언론의 자유(Pressefreiheit)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언론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로 사용했으며, ‘언론의 자유’는 의견표명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방송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자유로 사용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구실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던 요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유’와 ‘방종’을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책임성 없는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 인성교육엔 관심이 없었던 한국정부와 사회가 문제발생의 모든 근원을 항시 표면에 보이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의 올바른 뉴미디어 이용을 위한 기술교육에 동반되어야 할 윤리교육의 부재와 공급자들의 윤리의식 결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방기(放棄)한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언론자유가 책임과 한계를 내포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서구국가들도 언론자유는 ‘자유’의 의미를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1948년 이래 동시에 책임 또한 명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표현행위를 새로운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制約)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국가들의 경우를 볼 때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지어 아프리카 나미비아 혹은 말리 등의 국가들보다도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한국에서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문제로까지 논의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를 의미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인식의 오류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사회적 비판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왜 ‘문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확산되었는지 그 까닭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과 한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현재 ‘언론자유에 대한 책임성’ 논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II. 독일 언론자유 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

1. 언론자유 의 헌법적 보장

독일은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GG)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기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1)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 글과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명하고 전파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방해 받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언론자유와 방송과 영화를 통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검열은 시행 되지 않는다.²⁾

기본법 제5조 1항은 의견표명(의사표현)의 자유(Meinungsfreiheit)와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 그리고 언론의 자유(Pressefreiheit)와 방송의 자유(Rundfunkfreiheit)를 보장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³⁾첫째로, 의사(표현)의 자유(Meinungsfreiheit)⁴⁾는 ‘발언의 자유’(Redefreiheit)라고도 하며, 기본법 제5조 1항에서 언급하듯이, 모든 가능한 전달수단을 이용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가에 대항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대국가 방어권’이다. 이는 국가가 여론과 그와 관련된 정부와 입법자들과의 논쟁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1958년 류트-판결(Lüth-Urteil)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즉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사회

2) 기본법 제5조의 독일어 원본은 다음과 같다. Grundgesetz(GG) Artikel 5.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3) 이 이외에도 영화의 자유(Filmfreiheit)를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4) 의사의 자유(Meinungsfreiheit)는 의사표현 또는 의견표명의 자유(Meinungsausdrucksfreiheit)를 줄인 말이다.

에서 인격권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요컨대 가장 고결한 인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위해서 특별히 헌법에 제정되어”⁵⁾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질 권리로, 즉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누리는 권리라 하겠다.

여기서 ‘의견’(Meinung)의 개념은 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감정이나 이성에 근거한 가치판단에 달려 있지 않다. 이에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1972년 한 판결에서 한 “다양한 조직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구조에선 모든 의견, 즉 대부분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의견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⁶⁾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견’의 의미는 당시의 입장표명과 생각 등을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의견의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포스터 등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의견도 포함된다. ‘사실주장’(Tatsachenbehauptung)은 의견과 구별하고 있으나, 사실주장이 의견표현의 전제조건일 경우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발언의 논쟁일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⁷⁾ 의견표명과 사실주장을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주장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거제시가 요구되며, 반대로 의견표명의 경우 가치판단에 해당함으로써 증거제시는 불필요하다. ‘허위사실’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견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함으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나, 실제상황에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는 중요한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없이는 비판적인 의사형성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표명의 자유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는 ‘의사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인정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의 자유는 한국에

5) BVerfGE 7, 198(208) - Lüth

6) BVerfGE 33, 1(15) - Strafgefängene

7) 한국의 경우 ‘의견’이나 ‘사실주장’이냐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및 서구국가들에서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언론자유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발언’일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흔히 사용되는 ‘알 권리’(right to know)와 같은 의미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와 전달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의사표현과 정보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검열을 금지한다.

독일은 여러 국제법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와 기본권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유럽인권협약⁸⁾ 제10조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 이 둘 모두 언론자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견표명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언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이는 간섭을 받지 않고 또 국경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 받는 자유를 포함한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0조1항: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10. 1)

유럽인권협약 제25조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을 경우 모든 시민에게 유럽법원에 탄원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과 방송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도 제19조에서 의사표현 혹은 의견표명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듯이 표현의 자유의 의미는 단순히 표현하는 방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8)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의 공식적인 명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9)

즉, 표현의 자유는 한 개인의 정보수집에서부터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소유하고 유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보수집을 위해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워야 하며, 정보를 청구할 권리인 정보청구권이 언론자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되며,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엔 정보취득을 통한 ‘알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나 사상 및 의견을 ‘알릴 권리’도 포함된다.⁹⁾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일연방헌법 기본법 제5조에서 ‘정보의 자유’, 즉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정보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관례에 따라 ‘알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적인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인격발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996.12.31. 제정)을 두고 있다.¹⁰⁾

셋째로, 언론의 자유(Pressefreiheit)는 기본법 제5조 2항 2문에 의거하며, 언론법(Presserecht)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각 주(Land)의 언론법에 기초한다. 광의의 언론법엔 언론과 관련된 모든 법규들, 즉 노동법, 민법, 형법, 경쟁법, 카르텔법, 저작권법과 출판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협의의 언론법은 언론과 직접 연관된 언론특별법규들을 말한다. ‘언론’(Presse)의 개념은 발행부수와 발행범위에 관계없이 공중에 발행되는 것에 적합한, 배포를 전제한 모든 인쇄물을 칭할 뿐만 아니라, 언론종사자와 기술적, 경제적, 조직적인 구성을 갖춘 언론기업도 포함한다. 언론자유는 국가와 경제권력에 대항하는 방어권(Abwehrrecht)으로, 언론업에 종사함에 있어 개인적 권리로 이해될 뿐 아니라, 언론의 제도적인 독립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5조 1항에 의거한 언론자유 보호영역은 언론과 관련된 모든

9) 한수경, 나꼼수 블랙코미디 “닥치고 여성은 정치!” 미디어스 (2012.02.1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8/>

10)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1999), 79, 109. 김명진, 『미디어법』 (서울: 박영사, 2010), 37.

업무, 즉 정보수집에서 뉴스와 의견을 공표하고 전파하는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¹¹⁾ 언론의 자유로운 업무는 사전검열을 금지함으로써 또한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영역에 속하는 인쇄물은 정치, 문화, 세계관을 다루는 보도나 논평 등을 담은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락 및 광고부분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내용의 공표물이 언론자유 보호영역에 해당된다.¹²⁾

언론의 자유로운 역할을 바탕으로 한 언론의 책무는 1) 정보의 기능, 2) 의사형성의 기능, 3) 비판과 감시의 기능과 4) 공적 책무의 수행이다. 언론의 기능은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 선별해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완전한 혹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이 이해하고 또 의견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언론은 정보제공과 공론의 장으로써 기능을 하며, 어떤 사안이나에 따라 입장을 밝히고,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언론인들은 사회의 비판적 관찰자이며, 비판적 기술자로서 '감시견'(Watchdog)의 역할, 즉 '민주주의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 언론은 법적 지시에 따라 사회의 비판적 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즉 사회의 부정과 폐해를 밝혀내고, 사실을 캐묻고, 또 비판하는 것이다.¹³⁾

특히 '공적 책무'(Öffentliche Aufgabe) 수행을 헌법적 명령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주(Land) 언론법에 규범화하고 있다. 공적 책무의 수행은 개인과 민주주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언론발행으로 사회의 '공익'(Gemeinwohl)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 복리나 공익에 관한 문제를 국가가 독점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의 책무이행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우선된다. 민주주의에 필요한 의사형성과정은 '국민에서 국가로' 진행되기에 언론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책무를 지운다. 언론은 공개적인 토론을 주도하고 대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적 책무는 일반적인 여론시장을 형성하여 공개적 소통과정과 의사형성과정을 이루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돕고, 또 언론을 통한 정치적 포럼으로 시민과 대표자들 간의 정치적 발언과 소통을 가능하게

11) Reinhart Ricker, *Medienrecht.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4), 244 & 248.

12) Udo Branahl, *Medienrecht. Eine Einführung*. 2.Auflage, (Berlin: Westdeutscher Verlag, 1996), 21-22.

13) Die Zeit, *Öffentliche Aufgabe der Medien*, *Medienkunde* 2010/11, 146.

하는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이행된다.¹⁴⁾ 따라서 언론의 공적 책무의 핵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일이다. 정부와 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이 생각과 의견을 언론과 방송, 즉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며, 반대로 국민은 정부와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 알게 된다. 언론, 즉 미디어는 국민의 대변자이며, 동시에 권력의 감시자로 비밀에 붙이거나 은폐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밝혀내 알림으로써 민주주의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을 하는 즉, ‘제4의 권력’이다.¹⁵⁾ 말하자면 ‘권력을 감시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다양한 특권이 주어진다. 즉, 언론사 설립과 직업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 ‘허가로부터의 자유’(Zulassungsfreiheit), 관공서에 대한 ‘정보청구권’(Informationsanspruch)과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Zeugnisverweigerungsrecht), 언론서류의 압수 및 언론사 수색의 경우에 있어 특권을 누리며, 언론내용 위반의 경우엔 짧은 법적 ‘시효’(Verjährung)와 경영협회의 언론내용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는 ‘경향성보호’(Tendenzschutz)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내부적 언론의 자유(Innere Pressefreiheit)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들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언론발행의 권한과 인사 및 경영의 규율에 대한 참여권한을 구별한다. 또한 기본법의 객관적 법적 내용에 있어 법원은 ‘자유로운 언론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간주한다.’¹⁶⁾ 반면에, 언론인들에게는 보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세밀함의 의무’(Sorgfaltspflicht)가 요구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는 제5조 2항에 의거해, 즉 다른 중요한 법의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격받을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⁷⁾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14)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46-248.

15) Udo Branahl & Patrick Donges, “Warum Medien wichtig sind: Funktionen in der Demokrat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06.08. <http://www.bpb.de/izpb/7492/warum-medien-wichtig-sind-funktionen-in-der-demokratie?p=all>

16)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49-250.

17)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49.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은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로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독일연방의 모든 16개 주의 언론법(Landespressegesetz: LPG)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넷째로, 방송의 자유(Rundfunkfreiheit)는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수단’으로 기본법 제5조 2항 2문에서 방송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방송은 전자파의 형태로 내용을 공중에 전달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수용공간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모두 방송에 해당된다.¹⁸⁾ 공적 책무는 언론의 자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보 전달, 의사형성, 비판 및 공적 책무의 역할은 여기서도 유효하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사적, 공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질서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하며, 특히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문화적 동질성에 기여하는 문화적 요소로도 파악된다. 현재 독일의 방송구조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적 방송체제(Duales Rundfunksystem)로 운영되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오늘날 국민에게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기본공급(Grundversorgung)의 의무를 지닌다.

방송법(Rundfunkrecht)은 주(Land)간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과 헌법적 보장에 근거하여 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보장된다. ‘방송’(Rundfunk)의 개념은 모든 종류의 말, 음향과 사진으로 표현되는 상연 등을 전자파를 이용해 전송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¹⁹⁾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기본법 제5조 1항 1문에 의거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방송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국가로부터의 자유’(Staatsfreiheit), ‘프로그램 편성권의 자율’(Programmautonomie)과 ‘다원(양)성의 확보’(Pluralismus) 등으로 나뉜다.

18) Udo Branahl, *Medienrecht*, 23.

19) 방송의 개념은 기술적인 요소뿐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인 요소, 즉 방송은 조직구조와 프로그램기능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도구로 이해된다.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57.

특히 방송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나 또는 어떠한 사회적 그룹의 압력에 의해서도 장악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방송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회의 모든 그룹에게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장으로 기능해야 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²⁰⁾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²¹⁾이며,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Staatsfreiheit)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인물 선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금지하고 있다.²²⁾ 말하자면, 프로그램(편성)의 자유가 결국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공적 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일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것이다.²³⁾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개개 국민의 인격권의 발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수단적인 운명공동체”²⁴⁾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통치권의 정당성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인 정당성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함을 안고 있으며,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⁵⁾ 즉, 대의민주의제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부여는 언론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의사표현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언론을 위한 제도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 부여의 통로역할”²⁶⁾을 하는 것이다.

20)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57-258.

21) Ibid., 258.

22) Ibid., 258.

23) Udo Branahl & Patrick Donges, “Warum Medien wichtig sind.”

24) 최우정,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 41.

25) Reinhart Ricker, *Medienrecht*, 258.

26) Ibid.,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헌법의 수호자인 독일연방재판소(BVerfG)의 판결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며 발전되어 왔다. 특히 류트-판결(1958), 슈피겔-판결(Spiegel-Urteil, 1962)과 최근에 있었던 키케로-판결(Cicero-Urteil, 2007) 언론자유에 대한 수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언론자유와 한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인권으로 인간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형성을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보장되고, 특히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항하는 '방어권'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 할 때 그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보호받을 가치가 높은 다른 기본법과 충돌할 시에 각 법의 중요성 측정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진다. 기본법 제5조 2항은 표현의 자유의 제약²⁷⁾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 이 권리는 일반법의 규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과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규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²⁸⁾

독일은 나치시대에 언론과 방송이 선전도구로 악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1933년 나치독일의 언론은 나치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으며, 민주주의자, 평화주의자, 외국인, 유대인, 동성연애자, 장애인 등 나치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기사는 보도

27) 한국의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약되며, 독일과는 달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때 제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청소년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과 독일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28) 독일어 원본은 “(2)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이다.

할 수 없었다.²⁹⁾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은 나치에 의해 선별되어 언론직업을 수행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의 결과가 나치독일과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형상화되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최고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일반법(allgemeine Gesetze)³⁰⁾에 의한 언론의 제약도 학계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다. 청소년보호와 개인의 명예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제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격권 침해의 경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며, 사적 영역에서 다시 내밀영역을 구분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유명인이 주로 침해의 대상이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불분명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언론에 대항한 유명인들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고소사례가 지나쳐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한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높다.

Ⅲ.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의 문제점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독일은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소로 인정하지만,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은 언론자유 혹은 미디어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언론사들의 경제적 압박과 광고수익으로 인한 간접적인 광고주의 영향으로 언론인들이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1962년 슈피겔-사태(Spiegel-Affäre)에 이어 2005년에 발생했던 키케로-사태(Cicero-Affäre)는 독일의 언론자유가 또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다행히 200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키케로-판결(Cicero-Urteil)로 슈피겔-판결에 이어 언론의 자유가 재차 강조되었지만, 언론사의 압수수색으로 저널리스트들의 업무상의 제약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유로운 언론행위의 위축효

29) Die Zeit, *Medienkunde*. November 2010, 146.

30) '일반법'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법적 대상으로 인간 개인의 이익이나 사람으로 기본법도 법에 의해 제약되는 형태이다.

과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더욱이 2002년부터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살펴보면 독일의 언론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2002년 6위에서 2011년엔 사이프러스, 자메이카와 함께 공동 16위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이웃나라인 네덜란드, 스위스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공산국가였던 이웃의 체코(14위)보다도 낮아 서방국가들의 언론자유 수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서방국가들이 낮은 수준의 언론자유 지수를 기록하고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독일의 언론자유에 대한 현 상황을 언론인들은 2006년 기사들 중 하나에서처럼 “볼리비아의 언론자유가 독일보다 높아”³¹⁾ 등 스스로 비꼬고 있으며, 여전히 언론자유가 보장되긴 하지만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 언론인들의 견해이며,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에게 이러한 언론자유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나치시대와 차후 동독 등 언론자유 탄압과 관련해 독일은 직접 나쁜 경험을 쌓았다.”³²⁾ 그래서 독일 언론인들은 어떤 국가들보다도 독일이 언론자유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호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는데, 언론자유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영향이다. 물론 권위주의나 독재국가처럼 언론인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없지만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는 언론침해가 훨씬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재정권은 정권이 무너지면 해결될 일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언론자유 침해는 막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1년 9/11 사태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취해온 다양한 테러방지법 등은 언론자유 침해를 합법화시켜 왔으

31) Spiegel, “Mehr Pressefreiheit in Bolivien als in Deutschland,” Spiegel-Online 24 October 2006,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444291,00.html/>

32) Bern Hilder, “Gut ist nicht gut genug,” The European. 06 May 2011, <http://www.theeuropean.de/hilder-bernd/6582-pressefreiheit-in-deutschland/>

며, 독일의 경우 반테러법(Anti-Terror-Paket)의 일환으로 다양한 법규들이 입법화 되어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테러범죄 발생시 경찰과 국가정보원들의 정보접근을 쉽게 하겠다는 발상으로 전 시민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하는 법률로 비판을 받았던 온라인상의 검열허용이 문제가 되었다. 저널리스트들의 경우 정보원 및 취재원의 관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정보원들이 제보를 꺼려해 탐사 보도와 질 높은 언론보도를 통한 공적 책무 수행은 더욱 제약 받고 있다.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것들로 온라인 검열을 통한 정보원 겁주기, 저널리스트 감시, 정보의 자유의 부재, 경제적 압박과 기업의 요구와 취재시간의 부족 등 언론인들의 공적 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먼저 테러와 범죄를 막기 위해 독일정부는 통신사들의 고객 데이터 저장(최소 6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Vorratsdatenspeicherung)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저널리스트들의 대화내용까지 담긴 통신정보가 테러 색출을 위해 담당기관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인 데이터 저장을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본권 제10조의 침해를 근거로 헌법위반으로 판결을 내려 정보저장 금지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으나, 취재에 중요한 정보원과 취재원들이 통신상의 검열을 우려해 저널리스트들의 취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62년 나토(NATO)작전을 상세히 보도했던 슈피겔(Spiegel)이 국가기밀누설로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사건처럼, 2005년에 검찰은 다시 정치시사월간지 키케로(Cicero)를 기밀누설공모로 편집국 수색을 허가했다.³³⁾ 이로 인해 자료들이 압수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언론자유가 다시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의 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Der gefährlichste Mann der Welt, Bruno Schirra, 2005 April, p. 24)로 키케로 기자가 요르단 출신의 테러리스트에 대해 보도하면서 연방범죄국(Bundeskriminalamt: BKA)의 서류를 인용한 것이다.³⁴⁾

33) Henrik Schmitz, “Die Pressefreiheit ist auch in Deutschland bedroht,” 2010, <http://www2.evangelisch.de/themen/medien/die-pressefreiheit-ist-auch-in-deutschland-bedroht16869/>

34) 키케로 저널리스트인 브르노 쉬라(Bruno Schirra)는 2004년 9월 6일 392개의 각주가 달린 125 페이지에 해당하는 인터폴에서 찾고 있었던 테러리스트(Abu Musab az-Zarqawi)에 대한 연방

슈피겔 사건 이후 30년 만에 발생한 언론자유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으로 독일의 언론자유가 그간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언론자유에 침해란 비난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키케로-판결을 통해 기밀누설의 경우에도 저널리스트들이 처벌 받지 않음을 슈피겔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언론자유가 승리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언론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언론업무의 방해 및 자료들이 압수당한 사실에 대해 그에 합당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키케로-판결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전히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슈피겔-사태처럼 편집국이 6시간 동안이나 수색되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의 키케로-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 보장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들이 아닌 공무원 내부고발자들의 처벌을 강화시켜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를 어렵게 하고, 저널리스트들을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피겔은 다시 19세기 “카이저 빌헬름 시대로 돌아가는가?”라며 법관들의 불명확한 판결내용으로 언론에 큰 힘을 실어주는 못했음을 지적했다.³⁵⁾ 하지만 반대로 저널리스트들도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기본법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저널리스트들은 원하는 만큼 직무상의 기밀을 위반해도 된다. 단지 위반할 시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³⁶⁾

저널리스트들의 업무에 대한 국가권력의 방해는 저널리스트들을 감시해 왔던 연방정보부인 일명 ‘연방뉴스서비스’(Bundesnachrichtendienst: BND)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이 시사주간지 포커스 사건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보부의 해외첩보 활동에 대해 보도했던 시사주간지 『포커스』(*Focus*)는 반대로 연방정보부에 의해 감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슈피겔의 언론업무와 저널리스트를 감시해온 것으

범죄국 기밀보고서를 분석해 보도한 것이다.

35) Thomas Darnstädt, “Lass dich nicht erwischen, Journalist.” 2007,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cicero-urteil-lass-dich-nicht-erwischen-journalist-a-468964.html>

36) Thomas Darnstädt, “Lass dich nicht erwischen, Journalist.”

로도 밝혀졌다. 몇몇 내부의 저널리스트들이 연방정보부와 연통하면서 몇몇 특정 보도를 암암리에 방해하는 수법도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연방정보부는 해외(첩보)업무, 즉 국제적 테러조직, 범죄, 무기 및 마약 밀매, 기술유출, 돈세탁 등을 담당하는데, 국내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연방정보부가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넘겨준 사실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언론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것이 독일 언론환경에서 일상화가 되어가는 현상이라 언론인들의 경각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언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언론법(Landespressegesetz)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진다. 그 내용은 또한 언론인들의 프레스카트 뒷면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언론은 주언론법에 의거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 관공서는 언론과 방송의 대표자들에게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³⁷⁾ 또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적 행정기관, 경찰, 검찰과 의회에 대한 정보청구권이 있으며, 관공서는 진실을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분량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언론인들은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³⁸⁾ 정보의 자유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기본법 제5조로 엄연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언론인들이 일상업무에서 체험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관공서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며, 이로 인해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평들이 나온다.

자유로운 언론보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국가권력 이외에 경제적 압박과 기업들이 언론에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이다. 언론의 경제적 독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주들인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해 기업의 요구가 언론보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이 일상업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도를 유보하거나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며, 프리랜

37) 이 문구는 독일 언론협회에서 발행한 필자의 프레스카드에 명시된 문구이다.

38) Die Zeit, Medienkunde, 146.

서 저널리스트의 경우 이러한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또한 민영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기업의 소유구조가 공공영역이 50% 이상일 경우엔 정보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로 기업에 대한 취재가 좀 쉬워진 긍정적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요구는 여전히 언론보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슈피겔에서 조차 '겉끄러운' 기사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론자유가 여러모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인격권 즉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어 유명인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고소고발은 잦아져 언론자유를 한층 더 위축시킨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취재할 시간이 점차 적어져 언론의 책무인 '면밀한 검토'가 간과되고 심층취재와 탐사보도는 축소되어 점차적으로 통신사 뉴스들과 비슷해지는 '통조림'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IV. 인터넷 사이트 차단과 법적 근거

1. 인터넷 사이트 차단 유형

독일에서 웹사이트의 내용으로 인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기도 전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 이유는 내용적으로 극우 사이트와 아동포르노 사이트 등이 주를 이룬다. 2009년 인터넷 사이트 특히 아동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또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공급자들이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당시 가족부장관 우줄라 폰 데어 라인(Ursula von der Leyen)을 필두로 독일 정부는 아동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개정, 즉 '액세스블로킹'(Access Blocking)이 촉구되었다. 가족부 장관은 '아동포르노 데이터아우토반'(Datenautobahn der Kinderpornografie)을 끊어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³⁹⁾ 인터넷 접속의 약 75%를 책임지고 있는 5개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연방범죄국과 아동

포르노 사이트 차단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⁴⁰⁾

지금까지 ‘접근을 어렵게 하는 법’(Zugangerschwerungsgesetz)이 시행되기 2009년 이전에 차단된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Usenet(1991/92): 차단 원인은 포르노그라피로, 대학의 네트워크인 유저넷에 올라온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여성잡지인 ‘에마’(Emma)가 ‘유저넷-포르노-스캔들’로 보도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네트워크를 교수와 학생들이 포르노를 소비하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여성 이용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츠(TAZ)와 같은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비슷한 논조로 보도해 언론과 대학 관계자들 및 이용자들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대학의 남성 이용자들이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포르노나 보는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비취졌다는 비난들이 쏟아지기도 했다.⁴¹⁾
- www.xs4all.nl(1996/97): 테러 의혹 사이트 차단으로, 독일연구네트워크인 DFN이 네덜란드서버의 IP 주소를 몇 일간 차단한 사건이다. 원인은 테러조직을 만들려는 의혹을 받아온 잡지 ‘라디칼’(Radikal)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1984-1997년 사이에 210건이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범죄행위를 도왔다는 검찰의 판단에 기인한다. 1996년엔 독일 인터넷경제협회(ECO)의 자율규제단체인 ICTF(Internet Content Task Force) 등도 이 사이트 차단을 권고한 바 있다.⁴²⁾
- 노트라인-베스트팔렌(2001): 폭력사이트 차단으로, 노트라인-베스트팔

39) Torsten Klein, “Kinderpornografie: Der Traum von der Internetsperrung,” 2009, http://www.focus.de/digital/internet/kinderpornografie-der-traum-von-derinternetsperrung_aid_376961.html

40) Stefan Tomik, “Provider schließen Vertrag für Internet-Sperren,” 2009,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kinderpornografie-provider-schliessen-vertrag-fuer-internet-sperren-1782671.html/>

41) TAZ, “Hardcore-Pornos im Computer-Raum,” 1992, <http://www.toppoint.de/~stenner/emma.html>

42) Wikipedia, 2012, “Sperrungen von Internetinhalten,” http://de.wikipedia.org/wiki/Sperrungen_von_Internetinhalten_in_Deutschland/

렌 주 총리의 주도로 56 개의 인터넷 공급자들에게 미디어법에 근거한 극우내용을 담은 세 개의 사이트들과 테러, 잔인한 살인, 자살 및 성폭력을 담은 웹사이트 rotten.com 접근 차단을 요구해 시작되었다.⁴³⁾

- 포르노그래피 사이트(2007):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됨을 근거로 인터넷 공급자인 아코르(Acor)에 의해 자발적으로 연령대를 표기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들인 *sex.com*, *youporn.com* 혹은 *privatamateure.com*. 등이 차단되었다.⁴⁴⁾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외사이트들이 구글을 통해 여전히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어 구글에게도 이러한 사이트 차단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들은 (아동)포르노와 극우사이트 및 폭력적 사이트들이다. 이외에도 2008년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극우사이트, 폭력사이트, 음악산업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보호법에 근거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또 금지된 도박사이트 차단이 요구되었다. 2008년 사민당(SPD)은 학교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231개의 극우사이트들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구했는데, 반민주주의적인 사이트들에게 ‘프로파간다’로 이용될 공간을 공공영역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⁵⁾

2002년에 문제사이트 차단이 거론되자 ‘정보의 자유 침해 반대 선언서’와 함께 인터넷검열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되었다.⁴⁶⁾ 2009년에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제기되었으나, 여러 단체들은 인터넷 차단법의 기본권 침해를 들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2011년 4월 집권당인 우익보수 정당연정

43) Ibid.

44) Heise.de, “Arcor sperrt Zugriff auf Porno-Seiten,” 2007,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Arcor-sperrt-Zugriff-auf-Porno-Seiten-173460.html>, & Konrad Lischka, “Jugendschutz Abmahnwelle drängt Internetanbieter zur Web-Zensur,” 2007, <http://www.spiegel.de/netzwelt/web/0,1518,512821,00.html/>

45) SPD, “Sperrung von 231 Internetseiten in öffentlichen Gebäuden,” 2008,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spd-sperrung-von-231-internetseiten-in-oeffentlichen-gebaeuden_aid_354643.html/

46) ODEM, “Erklärung gegen die Einschränkung der Informationsfreiheit,” 2012, <http://odem.org/informationsfreiheit/erklaerung.html/>

(CDU-FDP) 정부는 결국 인터넷 차단법을 포기해야만 했다.

2. 아동포르노 사이트 차단 논란과 문제점

인터넷의 확산으로 아동포르노가 점차 문제가 되면서 해결방안으로 인터넷 사이트 차단이 거론되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은 국내에서의 차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되게 마련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포르노사이트, 특히 연령규제를 무시한 아동포르노에 해당되는 사이트들을 포함해 포르노그래피의 80% 정도가 다른 나라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시행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아동포르노의 접근을 차단하고 대신 '스톱'(Stop) 낱말을 세우고 아동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은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해당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외형적 접근차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동포르노를 막을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완전한 차단이 어려워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2009년 4월 17일 독일연방은 아동포르노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법률(Zugangsschwerungsgesetz)을 통과시켰고, 그 후 아동포르노 이외에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이트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고 해서 극우단체의 프로파간다와 아동포르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에,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사이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기본법 제5조 '정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차단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지 접근을 어렵게 할 뿐이며, 이러한 조치는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의 사이트들은 얼마든지 차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 대신에 이러한 법규는 인터넷검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만을 키웠다.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족부 장관은 우줄라(Ursula)가 아닌, 검열이란 의미인 ‘첸주어’(Zensur)와 이름의 ‘우줄라’(Ursula)를 조합해 만든 ‘첸주어줄라’(Zensursula)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인터넷 공급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접근을 포면상으로 차단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의 근원인 사이트 저작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아동포르노 사이트 차단인 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모기스(MOGIS e.V.)가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근차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모기스는 연방범죄국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동성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94%에 달하며, 그 중에서 45%는 이미 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이며, 18.5%는 알코올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포르노를 제작 유포한 경우의 76%가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들이 저지른 경우이며, 또한 40%의 범행자는 이미 경찰에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제시한 연방범죄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은 아동성범죄의 경우 4분의 1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6분의 1은 16세 미만, 심지어 8% 정도가 아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라는 사실이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포르노를 제작, 배포 혹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70%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친인척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⁴⁷⁾

따라서 이 단체의 주장은 단순히 인터넷 접근을 차단한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성범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성범죄를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진정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위험한 상징정치’(MOBiS, 2009) 대신에 실제로 아동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47) Christian Bahl, "Wovon reden wir eigentlich in dieser Debatte - Oder Zahlen und Fakten," 2009, <http://mogis-verein.de/2009/04/29/kern-der-debatte/>

것이다. 즉, 피해자 혹은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도움, 은폐된 성범죄를 줄이는 것, 유포된 내용을 단지 차단하는 대신에 범죄자를 쫓는 것, 소아성애자인 페도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접근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강하게 교육하는 것 등의 방책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⁴⁸⁾ 인터넷 차단법안에 찬성해야 될 것 같은 피해자단체가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처럼 실질적 효과도 없으면서, 결국에 인터넷상의 정보의 자유만을 규제하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만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차단을 할 뿐 내용은 사이버상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러한 차단을 피해 일반인들도 쉽게 아동포르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법안 반대자들이 모두 아동포르노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해적당 설립자인 릭 팔크빙에(Rick Falkvinge)의 올 9월 초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또 인터넷검열의 확산을 근거로 앞으로 10년 후엔 ‘아동포르노 소지의 합법화’⁴⁹⁾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아동보호단체뿐⁵⁰⁾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해적당내에서까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질까지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규칙이 필요하듯 디지털 공동체도 잘 어우러져 살 규칙과 제대로 작동하는 법치시스템이 필요하다’⁵¹⁾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포르노를 빙자한 인터넷검열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는 여전히 비판 받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인터넷 접근차단 법안이 없이도 독일 현행법에 의해 아동포르

48) Christian Bahl, “Wovon reden wir eigentlich in dieser Debatte,”

49) Rickard Falkvinge, “The three reasons possessions of child porn must be re-legalized in coming decade”. Falkving & Co. on, <http://falkvinge.net/2012/09/07/three-reasons-child-porn-must-be-re-legalized-in-the-coming-decade/>

50) Katja, “Straffreiheit für den Besitz von Kinderpornografie,” 2012, <http://www.gegen-missbrauch.de/blog/straffreiheit-fur-den-besitz-von-kinderpornografie/>

51) Nachrichten.at. “Kinderpornografie: Auch Österreich Piraten kritisiert Falkvinge,” 2012, <http://www.nachrichten.at/nachrichten/politik/innenpolitik/art385,964074/>

노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연방범죄국 및 경찰청에서 아동성범죄를 퇴치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동포르노는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성적 악용(학대)으로 보여지는 묘사”로 정의된다. 또한 청소년포르노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포르노는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데이터전송, 그림, 사진, 녹음테이프, 인쇄 등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송 혹은 손에서 손으로,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⁵²⁾ 또한 오늘날 현대기술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아동포르노를 생산,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포르노 제작 및 유포에 대해 경찰의 특별단속도 종종 이루어져 왔다. 아동포르노의 경우 형법 §184b에 따라 아동포르노를 유포, 소지 또는 취득한자, 혹은 청소년포르노의 경우 형법 §184c에 따라 청소년포르노 유포, 소지 또는 취득한 자는 5년에서 10년까지의 자유형에 처한다.⁵³⁾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연방범죄국에서도 아동포르노와 아동섹스관광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뉴스그룹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받고 있다.⁵⁴⁾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도 아동포르노와 성적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를 빌미로 인터넷규제와 검열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언론자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훨씬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들이 따른다. 독일연방재판소는 ‘국가기밀’로 규정된 문서의 폭로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독일연방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슈피겔 사건에 이어

52) Polizeipräsident Berlin, “Bekämpfung der Kinder- und Jugendpornografie,” 2012, <http://www.berlin.de/polizei/kriminalitaet/kinderpornographie.html#rechtslage>

53) Polizeipräsident Berlin, “Bekämpfung der Kinder- und Jugendpornografie,”

5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 Bundeskriminalamt/Österreich, 2012, “Meldestelle Kinderpornographie und Kindersextourismus,” <http://www.bmi.gv.at/cms/BK/meldestellen/kinder/start.aspx>

키케로-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이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간섭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언론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으며, 언론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법적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인격권의 보장이 유명인들에게 종종 악용되어 언론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들은 증가하고 있어 언론역할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역기능을 들어 네티즌들의 행위들을 비윤리적으로 규정하고 악법시행을 위한 빌미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네티즌들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지나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선전으로 법규를 만들어 국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막기보다 더 근본적이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의 침해가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인터넷검제로 인해 '인터넷감시국'의 딱지가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사례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드러난다.

독일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법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재차 각인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적 폐해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유흥과 퇴폐적 사회 분위기와 미디어가 광고를 통해 생산, 유포하는 수많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언론의 공책 책무수행과 관계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사회의 폐해를 밝히고 비판해야 할 언론의 윤리적 책임은 없는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한국의 미디어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관계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 없이 선정적 보도로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음에도, 윤리적 책임에 대해선 논의가 거의 없다. 대신에 오히려 네티즌들의 정당한 정치적 행위까지 문제삼고 있으며, 사회적 폐단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법의 강화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언론자유를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함에도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언론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론인들과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책무와 문제를 단지 언론인들과 네티즌들에게 돌리기 보다 우선적으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언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언론장악과 탄압을 막아야 할 것이다. 헌법의 수호자로 기능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밀폭로’로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국가의 자의적 해석보다 언론자유를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재차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 수호의 역할을 관찰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탄압, 인터넷상에서의 검열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약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인들의 공적 책무에 대한 성실한 수행뿐 아니라 언론자유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9월 15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10월 22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11월 17일

초록

현대 독일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와 책임

한 수 경

독일은 표현의 자유, 즉 언론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소로 간주하며,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검열과 압박은 은밀하고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기에 심각하다. 특히 2011년 9/11 사태 이후에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은 독일 언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언론자유 침해를 합법화시켜 왔다. 독일연방정부는 소위 '반테러법'(Anti-Terror-Paket) 같은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규들의 입법화를 시도해 왔다.

다행히 독일연방재판소는 1962년 슈피겔-사태와 같이 키케로-사태에도 '국가 기밀로 규정된 문서의 폭로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이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간섭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언론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아동포르노와 같은 사회문제를 이유로 사이버상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 따라서 독일에선 언론자유를 강화시킬 법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주제어 : 독일, 민주주의, 언론자유, 공적 책무, 인터넷규제

Abstract

Freedom of the Press and its Accountability in Modern German Democracy

Han, Su-Kyung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freedom of the press, is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of democracy, and journalists play a role as watchdog in democracy. However, censorship and the suppression of the press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are even more critical, because they are caused in hidden and veiled ways. The declaration of war on terrorism after the 9/11 attacks, in particular, negatively influenced media landscapes in Germany, which has legitimized the violence against free press.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planned to enact various laws against terror, so called 'Anti-Terror-Pact'.

Fortunately, in the case of the Cicero-Affair accused of treason in similar to the Spiegel-Affair (1962),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djudicated that journalists may not be punished in the matter of leakage of governments secrets. Nevertheless, it was warned that the press freedom is seriously in danger, because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s have attempted to interference the public role of journalists in various ways. Furthermore, social problems such as child pornography are also concerned with new internet regulations which restrict the free information exchanges of citizens in cyberspace. Therefore, a new Act is required to strengthen freedom of the press in Germany.

□ Key words : Germany, Democracy, Freedom of the Press, Public Task, Internet Regulations

참고 문헌

- 김명진. 2010. 『미디어법』. 서울: 박영사.
- 임병국. 1999.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최우정. 2009.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한국법제연구원.
- 한수경. 2012. 나꼼수 블랙코미디 “닥치고 여성은 정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8/>
- AFP. 2008. “SPD: Sperrung von 231 Internetseiten in öffentlichen Gebäuden”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spd-sperrung-von-231-internetseiten-in-oeffentlichen-gebaeuden_aid_354643.html/
- Bahls, Christian. 2009. “Wovon reden wir eigentlich in dieser Debatte. Oder Zahlen und Fakten.” <http://mogis-verein.de/2009/04/29/kern-der-debatte/>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 Bundeskriminalamt/Österreich, “Meldestelle Kinderpornographie und Kindersextourismus.” <http://www.bmi.gv.at/cms/BK/meldestellen/kinder/start.aspx/>
- BVerfGE 7, 198(208) – Lüth
- BVerfGE 33, 1(15) – Strafgefangene
- Branahl, Udo. & Donges, Patrick. 2011. “Warum Medien wichtig sind: Funktionen in der Demokrat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izpb/7492/warum-medien-wichtig-sind-funktionen-in-der-demokratie?p=all/>
- Branahl, Udo. 1996. *Medienrecht. Eine Einführung*. 2.Auflage. Berlin: Westdeutscher Verlag, 23.
- Darnstädt, Thomas. 2007 “Lass dich nicht erwischen, Journalist.”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cicero-urteil-lass-dich-nicht-erwischen-journalist-a-468964.html/>
- Die Zeit, *Öffentliche Aufgabe der Medien, Medienkunde* 2010/11, 146.
- Falkvinge, Rickard. 2012. “The three reasons possessions of child porn must be re-legalized

- in coming decade.” <http://falkvinge.net/2012/09/07/three-reasons-child-porn-must-be-re-legalized-in-the-coming-decade/>
- Heise.de, 2007. “Arcor sperrt Zugriff auf Porno-Seiten.”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Arcor-sperrt-Zugriff-auf-Porno-Seiten-173460.html>
- Hilder, Bern. 2011. “Gut ist nicht gut genug.” <http://www.theeuropean.de/hilder-bernd/6582-pressefreiheit-in-deutschland>
- Klein, Torsten. 2009. “Kinderpornografie: Der Traum von der Internetsperrung.” http://www.focus.de/digital/internet/kinderpornografie-der-traum-von-der-internet-sperrung_aid_376961.html
- Lischka, Konrad. 2007. “Jugendschutz Abmahnwelle drängt Internetanbieter zur Web-Zensur.” <http://www.spiegel.de/netzwelt/web/0,1518,512821,00.html>
- Nachrichten, at. 2012. “Kinderpornografie: Auch Österreich Piraten kritisiert Falkvinge.” <http://www.nachrichten.at/nachrichten/politik/innenpolitik/art385,964074/>
- ODEM. “Erklärung gegen die Einschränkung der Informationsfreiheit.” <http://odem.org/informationsfreiheit/erklaerung.html>
- Polzeipräsident, Berlin. 2012. “Bekämpfung der Kinder- und Jugendpornografie.” <http://www.berlin.de/polizei/kriminalitaet/kinderpornographie.html#rechtslage/>
- Ricker, Reinhart. 1994. *Medienrecht.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 Schmitz, Henrik. 2010. “Die Pressefreiheit ist auch in Deutschland bedroht.” <http://www2.evangelisch.de/themen/medien/die-pressefreiheit-ist-auch-in-deutschland-bedroht16869/>
- Ler,hen,dpa, 2006. “Mehr Pressefreiheit in Bolivien als in Deutschland.”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444291,00.html>
- TAZ, 1992. “Hardcore-Pornos im Computer-Raum.” <http://www.toppoint.de/~stenner/emma.html>
- Tomik, Stefan. 2009. “Provider schließen Vertrag für Internet-Sperren.”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kinderpornografie-provider-schliessen-vertrag-fuer-inter->

net-sperren-1782671.html/

Wikipedia, 2012. "Sperrungen von Internetinhalten." http://de.wikipedia.org/wiki/Sperrungen_von_Internetinhalten_in_Deutschland/